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투자위험등급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1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표지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위험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5.71%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4.90%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1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투자위험등급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5.71%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4.90%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 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1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제19조 6호 가목 및 라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제19조 6호 가목 및 라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9.47%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8.11%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1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9.47%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8.11%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4) 파생상품 관련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

		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가)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나) (가)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1일

4. 대비표

[변경등록신청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1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여종훈→신봉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신봉관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1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3. 책임운용전문인력 : 신봉관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1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여종훈→신봉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신봉관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1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3. 운용전문인력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신봉관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1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여종훈→신봉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신봉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퇴직연금블루칩바스켓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1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신봉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1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여종훈→신봉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신봉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제4부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파워중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1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2)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2)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신봉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1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여종훈→신봉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여종훈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신봉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China 증권 자투자신탁(제1호) [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8월 24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AG : BW409 종류 CG : BW410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11. 종류 A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2. 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11. 종류 AG 수익증권 12. 종류 CG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AG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9.5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7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종류CG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9.5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2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제40조 (판매 수수료)	제2항 <추가>	제2항 3.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제41조 (환매 수수료)	제2항 1. 종류 A 및 A-E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종류 C1, C-F, C-E 및 S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제2항 1. 종류 A, A-E 및 AG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종류 C1, C-F, C-E, CG 및 S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C2~C4, C-F, S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C2~C4, C-F, S, AG 및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table>
<tr><td>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W409
CG BW410</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W409
CG BW410</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1일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AG, CG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r><td>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
<종류 AG, CG 신설></td>
<td>[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
<table>
<tr><th>종류</th><th>판매 수수료</th><th>환매 수수료</th><th>총보수</th><th>판매보수</th></tr>
<tr><td>AG</td><td>납입금액의 0.5% 이내</td><td>30일미만: 이익금의 10%</td><td>연 1.398%</td><td>연 0.37%</td></tr>
<tr><td>CG</td><td>없음</td><td>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30%</td><td>연 1.548%</td><td>연 0.52%</td></tr>
</table></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td>
<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G, CG 신설>

나. 환매</td>
<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
<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
<tr><td>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
<tr><td>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able>
나. 환매</td>
</tr>
</table>

<table>
<tr>
<td></td>
<td>(3) 환매수수료
<종류 AG, CG 추가></td>
<td>(3) 환매수수료
<table>
<tr><th>종류 AG</th><th>종류 CG</th></tr>
<tr><td>-30일미만:
이익금의 10%</td><td>-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td></tr>
</table>
</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G, CG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G, CG 신설></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종류형</th></tr>
<tr><th>종류 AG</th><th>종류 CG</th></tr>
<tr><td>선취 판매 수수료</td><td>납입금액의 0.5%이내</td><td>없음</td></tr>
<tr><td>후취 판매 수수료</td><td colspan="2">없음</td></tr>
<tr><td>환매 수수료</td><td>30일미만:
이익금의 70%</td><td>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td></tr>
</table>
주) 판매수수료는 상기 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지급비율(연간, %)</th></tr>
<tr><th>종류 AG</th><th>종류 CG</th></tr>
<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0.9500%</td><td>0.9500%</td></tr>
<tr><td>판매회사보수</td><td>0.3700%</td><td>0.5200%</td></tr>
<tr><td>신탁업자보수</td><td>0.0600%</td><td>0.0600%</td></tr>
<tr><td>일반사무관리보수</td><td>0.0180%</td><td>0.0180%</td></tr>
<tr><td>보수합계</td><td>1.3980%</td><td>1.5480%</td></tr>
<tr><td>기타비용</td><td>실비</td><td>실비</td></tr>
<tr><td>총보수및비용</td><td>1.3980%</td><td>1.5480%</td></tr>
<tr><td>증권거래비용</td><td>실비</td><td>실비</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d></td><td>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AG, CG 신설></td><td>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AG</td><td>193</td><td>499</td><td>838</td><td>1,843</td></tr><tr><td>종류CG</td><td>159</td><td>500</td><td>877</td><td>1,995</td></tr></table></td></tr>
<tr><td>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r><td>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td><td>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td><td>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td></tr>
</table>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1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AG : BW411 종류CG : BW412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9. 종류A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0. 종류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9. 종류 AG 수익증권 10. 종류 CG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A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00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10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0 [종류C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00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20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0
제40조 (판매 수수료)	제2항 <추가>	제2항 3.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C2~C4, C-F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 주석사항** · 종류 C2~C4, C-F, AG 및 CG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W411 CG BW412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W411 CG BW412
제2부 집합투자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1일

<table>
<tr><td>기구에 관한 사항</td><td></td><td>-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AG, CG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r><td>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td></tr>
</table>

<table>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G, CG 신설>
</td>
<td>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
<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
<tr><td>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
<tr><td>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able>
</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G, CG 신설>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이내(종류 A-E 는 0.5% 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td>
<td>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종류형</th><th rowspan="2">지급시기</th></tr>
<tr><th>종류 AG</th><th>종류 CG</th></tr>
<tr><td>선취판매수수료</td><td>납입금액의 0.5%이내</td><td>없음</td><td>매입시</td></tr>
<tr><td>후취판매수수료</td><td colspan="2">없음</td><td>환매시</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2">환매수수료 없음</td><td></td></tr>
</table>
주) 판매수수료는 상기 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td>
</tr>
</table>

<table>
<tr>
<td></td>
<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G, CG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AG, CG 신설></td>
<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지급비율(연간, %)</th></tr><tr><th>종류 AG</th><th>종류 CG</th></tr><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0.20%</td><td>0.20%</td></tr><tr><td>판매회사보수</td><td>0.51%</td><td>0.52%</td></tr><tr><td>신탁업자보수</td><td>0.03%</td><td>0.03%</td></tr><tr><td>일반사무관리보수</td><td>0.02%</td><td>0.02%</td></tr><tr><td>보수합계</td><td>0.76%</td><td>0.77%</td></tr><tr><td>기타비용</td><td>실비</td><td>실비</td></tr><tr><td>총보수및비용</td><td>0.76%</td><td>0.77%</td></tr><tr><td>합성총보수및비용</td><td>1.76%</td><td>1.77%</td></tr><tr><td>증권거래비용</td><td>실비</td><td>실비</td></tr></table>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AG</td><td>229</td><td>616</td><td>1,042</td><td>2,307</td></tr><tr><td>종류CG</td><td>181</td><td>572</td><td>1,002</td><td>2,282</td></tr></table></td>
</tr>
<tr>
<td>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
<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
<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
</tr>
<tr>
<td>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td>
<td>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td>
<td>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td>
</tr>
</table>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슈퍼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클린클래스(종류 AG)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1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AG : BW407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8. 종류 A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8. 종류 AG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A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0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제40조 (판매수수료)	제2항 <추가>	제2항 2.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 주석사항** · Class C2~C4, S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 주석사항** · Class C2~C4, S, AG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W407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W407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1일 - 클린클래스(종류 AG)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AG 신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별** / **가입자격** 종류 AG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

<table>
<tr><td></td><td></td><td><table><tr><td></td><td>권</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본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G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종류 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G 신설>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table><tr><th rowspan="2">구 분</th><th>지급비율</th><th rowspan="2">지급시기</th></tr><tr><th>종류 AG</th></tr><tr><td>선취판매수수료</td><td>납입금액의 0.5%이내</td><td>매입시</td></tr><tr><td>후취판매수수료</td><td>해당사항 없음</td><td>환매시</td></tr><tr><td>환매수수료</td><td>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td><td>환매시</td></tr></table>주) 판매수수료는 상기 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td></tr>
</table>

<table>
<tr>
<td></td>
<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G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AG 신설></td>
<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table><tr><th rowspan="2">구분</th><th>지급비율(연간, %)</th></tr><tr><th>종류 AG</th></tr><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0.600</td></tr><tr><td>판매회사보수</td><td>0.300</td></tr><tr><td>신탁업자보수</td><td>0.050</td></tr><tr><td>일반사무관리보수</td><td>0.020</td></tr><tr><td>보수합계</td><td>0.970</td></tr><tr><td>기타비용</td><td>실비</td></tr><tr><td>총보수및비용</td><td>0.970</td></tr><tr><td>합성총보수및비용</td><td>1.970</td></tr><tr><td>증권거래비용</td><td>실비</td></tr></table>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AG</td><td>251</td><td>683</td><td>1,160</td><td>2,576</td></tr></table></td>
</tr>
<tr>
<td>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
<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
<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
</tr>
<tr>
<td>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td>
<td>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td>
<td>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td>
</tr>
</table>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차이나포커스해외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클린클래스(종류 AG) 신설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수익률변동성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1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AG : BW405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3. 종류 A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3. 종류 AG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 A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5.4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8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제40조 (판매 수수료)	제2항 <추가>	제2항 2.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추가>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 다른 종류형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80%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50%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략) (삭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W405

<table>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신설></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W405</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1일
- 클린클래스(종류 AG) 신설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AG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종류 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80%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50%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현행과 동일) (삭제)</td></tr>
</table>

<table>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G, CG 신설></td>
<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
<tr><th>구분</th><th>가입자격</th></tr>
<tr><td>종류 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
</table>
</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G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종류 AG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지급비율</th></tr>
<tr><th>종류 AG</th></tr>
<tr><td>선취판매수수료</td><td>납입금액의 0.50%이내</td></tr>
<tr><td>후취판매수수료</td><td>없음</td></tr>
<tr><td>환매수수료</td><td>없음</td></tr>
</table>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지급비율(연간, %)</th></tr>
<tr><th>종류 AG</th></tr>
<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0.540%</td></tr>
<tr><td>판매회사보수</td><td>0.380%</td></tr>
<tr><td>신탁업자보수</td><td>0.050%</td></tr>
<tr><td>일반사무관리보수</td><td>0.018%</td></tr>
<tr><td>보수합계</td><td>0.988%</td></tr>
<tr><td>기타비용</td><td>실비</td></tr>
<tr><td>총보수및비용</td><td>0.988%</td></tr>
<tr><td>합성총보수및비용</td><td>1.988%</td></tr>
<tr><td>증권거래비용</td><td>실비</td></tr>
</table>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
<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
<tr><td>종류AG</td><td>253</td><td>689</td><td>1,170</td><td>2,600</td></tr>
</table>
</td>
</tr>
</table>

	<종류 AG 신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